

##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체인력(한시임기제 공무원) 채용 공고

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체인력(한시임기제7호)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5월 25일
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 (1개 직위, 총1명)

소속	직급	분야	인원	담당 업무
사무국 조사2과	한시임기제 7호	조사 담당	1명	·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소관 분야 조사계획 수립 · 소관 사무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· 소관 조사 관련 보고서 종합, 분석 및 기록관리 등

### 2. 관련 법령

-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공무원임용규칙
-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, 균형인사지침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#### □ 공통요건 [최종시험 예정일 기준('22.6.24.)]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20세 이상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 【국가공무원법】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 【공무원임용시험령】

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제1항에 의거, 임용 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

## □ 응시자격 기준

직급		채용자격
한 시 임기제 7호	학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</li> <li>·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관련 분야 학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학, 과학수사학, 법과학, 범죄수사학, 범죄학, 경찰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</li> </ul> </li> <li>※ 관련 분야 실무경력 : 조사, 수사, 감사, 인권, 경찰행정</li> </ul>
	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·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·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관련 분야 실무경력 : 조사, 수사, 감사, 인권, 경찰행정</li> </ul>
	우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 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관련 분야 복수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(학위 우대요건은 유리한 1개만 적용)</li> <li>※ 우대기준 적용일: 원서접수 마감일('22.6.7.)</li> </ul>

※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<붙임>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(직무기술서) 참고

## □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

### <공통>

- ① 응시자격요건(학위, 경력)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
  - ※ 응시자는 희망하는 직위와 자격요건(학위, 경력)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(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지원 불가)
- ② 경력기간 및 학위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2022.6.24.) 기준으로 판단
- ③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

### <학위의 범위>

- ‘학위’ 요건의 ‘관련전공(분야)’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  - ※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
  - ※ 관련 전공(분야) 학위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전공(분야)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
  - ※ ‘학위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,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.

## <경력 범위>

- '경력'은 응시자격요건(직무기술서)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
  -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(근무기간, 직위 또는 직급, 담당업무 명시)에 대한 경력(재직)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 -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
  - '실무경력'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뿐만 아니라
    -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
    - 국가,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
  - 경력 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,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
- ※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
- ※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
- ※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(예: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)로 보완하여야 하며, 보완서류 중 '폐업사실증명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', '소득금액증명서' 는 필수 제출

## 4. 채용조건

- 근무지 :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(서울 중구)
- 근무기간 :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
- 근무시간 : 주 35시간(1일 7시간, 점심시간 제외)

## □ 보 수

- 봉급 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월 봉급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  - \* 2022년 한시임기제7호 봉급기준액 : 월2,119,100원(주 40시간 기준)
- 수당 :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,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
- 보험가입 :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
  - \* 한시임기제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으며, 고용보험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

## 5. 시험 방법 및 일정

### □ 시험방법 : 1차 서류전형 + 2차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
  - (위원구성) 내부 1명, 외부 1명
  - (진행절차)
    -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    - 다만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(적극적 서류전형)
  - \*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
    - ①자기소개서, ②직무수행계획서, ③전공학위·직무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, ④관련 분야 근무경력, ⑤관련 분야 학위
  - \* 적극적 서류전형 시,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복수·상위 학위가 있을 경우 점수에 반영(우대요건)하므로 반드시 표기

○ 2차 면접시험

- (위원구성) 내부 1명, 외부 1명

- (진행절차)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• **평정요소\*별로 3단계(상, 중, 하)로 평정**

\* ①공무원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·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•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**아니한 자**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

• 평정결과 ‘상’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, ‘상’의 개수가 같은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

[불합격 기준]  
 -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  
 - 위원 1인당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

\* 추가합격자 결정 :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

□ 채용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/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 합격자발표
'22.5.25.(수)~ 6.7.(화)	'22.6.2.(목)~ 6.7.(화)	'22.6.17.(금) / '22.6.20.(월)	'22.6.24.(금)	'22.6.27.(월)

※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,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,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(www.truth2018.kr),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(gojobs.go.kr)에 게시됩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
## 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위원회 홈페이지,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
- 접수기간 : '22. 6. 2.(목) ~ 6. 7.(화)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(우편번호 04535)  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(☎02-6124-7553, 7554)
- 접수방법 : 온라인, 방문,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
  - 온라인 접수
    - 나라일터 홈페이지 「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」에 게시된 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체인력 모집공고’를 통하여 접수
      - \* 첨부 파일명은 임용예정직급-응시자이름(관련서류) 순으로 기재  
예시) 한시임기제7호-김○○(경력증명서)
      - \*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「대체인력뱅크 이력서 지원현황」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
      - \* 온라인 제출자는 면접시 원본 제출
  -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  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 ~ 18:00(12:00 ~ 13:00 제외)내에만 방문 접수 가능
    -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(2022.6.7.)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, 겹봉투에 “응시원서 재중”이라고 표기
      - ※ 접수번호(응시번호) 등은 마감일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하며,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
      - ※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.

## 7. 제출 서류

### □ 공통서류(필수제출)

#### ① 응시원서 1부

<별지 제1호 서식>

※ 정부 수입인지 또는 정부 전자수입인지(7천원) 첨부(우체국에서 구입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(단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#### ② 이력서 1부

<별지 제2호 서식>

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※ 별도서식은 없으며,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

-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⑥ 주민등록 초본 1부(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

□ **개별서류 (해당자에 한함)**

⑦ 대학교(학사)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

- ※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할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,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경우 필히 제출
- ※ 전형위원 제척·기피,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

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

- ※ 근무기간별 직위(급) 및 담당업무, 발급기관(회사)명, 직인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,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제출
- ※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,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
- ※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('22.6.24.) 기준

⑨ 학위요건 - 학위논문요약서 (석사·박사) <별지 제6호 서식>

응시원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·변조된 경우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,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**8. 기타 유의사항**

-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, 휴직 및 출산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-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, 위원회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(보수·복무 등)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.
-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,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,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

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'22. 7. 19. ~ '22. 8. 12.
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.
-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·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수급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.(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)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 포함)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☎ 02-6124-7553, 7554
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go.kr](http://www.mpm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